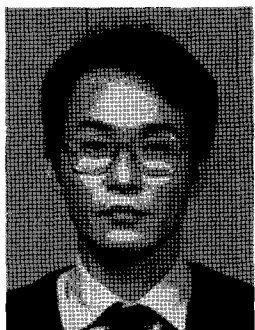


공정거래정책 20년의 공과와 과제



박 동 철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한국 경제는 지금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선진적인 시장경제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발달, 지식경제로의 이행 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쟁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1. 문제제기

한국의 본격적인 경쟁법 혹은 독점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법률이 확충되는 등 경쟁제도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정부주도의 산업사회, 준 개방경제라는 20세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21세기 대내외 경제 환경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이 진행되어 정부주도의 경제 시스템이 폐기되고 시장 메카니즘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내외적으

로도 20세기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그 한 축은 경제의 글로벌화이며 다른 한 축은 경제의 디지털화 혹은 지식기반화이다. 이 양대 축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각국 경제의 구조나 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제도와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선진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경쟁제도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20여년 간의 경쟁정책의 공과를 평가하

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제도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경쟁정책의 역사와 공과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보기에 드물게 일찍부터 경쟁법을 마련한 나라이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50년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이 이미 20년 전에 마련되었기 때문이다.¹⁾ 물론 거꾸로 말하면 압축 성장 과정에서의 모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순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1980년 경쟁법은, 이른바 민간주도경제로의 이행 혹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궤를 같이 하면서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는 1979~80년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의 일환으로서,²⁾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방화와 자유화·민영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공정거래 혹은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공정거래 부문을 확대·개편하여 경쟁법을 마련하였다.

‘공정거래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더불어 다른 경쟁법들도 마련되었다.³⁾ 이러한 경쟁

법의 마련과 경쟁정책의 실시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이나 경제구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쟁당국의 규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경쟁정책의 의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쟁당국의 구체적인 규제대상이나 방법,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및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 논리적으로 혹은 통시대적으로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경쟁정책의 적극적 도입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에서 경쟁정책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다.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 하에서 선별적인 산업 혹은 기업정책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한 국내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은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경쟁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써, 물론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를 획득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민간 경제주체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다.

둘째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80) 이전의 공정거래제도 혹은 경쟁제도로는 1973년의 ‘물가안정법’, 1975년의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법률은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형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쟁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1980년은 정치적 변화기이면서 동시에,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성장 과정에서 처음으로 (-) 성장률을 기록한 해이다.
 3)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198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1986),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외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9) 등이다.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수준을 제고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그리고 1980년대 초의 민영화나 중화학투자조정 등의 과정에서 독과점은 심화되었고,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또 일부 기업집단에로의 경제력 과다집중에 대한 각계의 비판 등을 수용하여 경쟁당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직접상호출자의 전면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회사 출자한도제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시장집중 규제(시장경쟁을 보호하는 규제)와 일반집중 규제(재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치우친 정책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경제력 집중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 규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제한적 팽창과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경쟁당국은 시장 가격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면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통신이나 가스 등 과거 자연독점 분야에 대한 경쟁 도입도 확대시켜 왔으며, 개별법상 허용된 각종 카르텔도 폐지 또는 개선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였다.

결국 지난 20여 년간 경쟁당국은 경쟁정책 및 경제력집중억제정책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범위를 확산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을 가능하게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경쟁정책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우선, 경쟁정책이 여전히 정부의 산업정책에 종속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시장경제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경쟁제한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점, 경쟁당국의 위상도 높아져 온 점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⁴⁾ 하지만 최근 이른바 빅딜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전히 산업정책이 경쟁정책에 우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둘째, 경쟁정책 본래의 목적이나 위상과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지난 20여 년간을 돌아보면 경쟁수준의 제고 및 공정한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보다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규제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도 경쟁당국의 역할이 대규모기업집단의 해체에 상대적으로 경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경쟁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독점기업보다는 경쟁기업,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도록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쟁정책의 핵심이라고 간주되는, 시장을 독점화 시키는 수평기업결

4) 경쟁당국은 1981년 경제기획원 산하의 공정거래실로 출발하였다. 1994년에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총리 직속의 중앙독립행정기관이 되었으며, 1996년에는 위원장의 지위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조직도 크게 확대되었다.

합을 억제하기보다는 단일기업 독점이나 수직적 거래 관계에 더 큰 관심이 기울여졌다.

이상의 문제점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현행 경쟁제도 및 정책이 과거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 최근에는 구조조정기(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기)라는 특수한 상황 등에 근거한 것이어서 21세기 새로운 경제 환경에 조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점이다.

3.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와 경쟁정책의 중요성

한국 경제는 지금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적인 시장경제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의 글로벌화, 전자상거래의 발달, 지식경제로의 이행 등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경쟁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주도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주도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민간 경제 부문의 성장에 따라 한계에 봉착한 정부 규제 위주의 성장 방식을 대체하는 방편으로,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범세계화 과정에서 촉진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경제 운용을 그 근본 원리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자유로운 경쟁이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 그 자체가 지고의 선은 아니다. 경쟁을 통한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사회적 풍요의 달성이 목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곧 풍요의 달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과도한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성 혹은 파괴성, 무차별 경쟁에 따른 독점의 형성 및 그 폐해, 불공정 경쟁에 의한 경제적 약자의 피해 등 넓은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형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범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의 형성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및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수립이야말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초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 및 사이버화 등과 함께 기존의 경쟁개념 혹은 경쟁의 본질이 바뀌고 있을 뿐 아니라,⁵⁾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무엇보다 각국의 경쟁제도가 중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쟁법이 일국법

5) 예를 들면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시장 경쟁으로의 변화 등이다.

(national law)임에는 변화가 없지만, 점차 경쟁법의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데,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재수립은 당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현 경제 위기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외환 위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과거 고성장 시대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쟁정책의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정부주도의 규제 위주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데 기인한다.

지난 40여년의 공업화 과정에서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통한 경제 운용 방식을 채택, 생산요소의 배분 과정이나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개입해 왔다. 그것은 경제 규모가 작은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 상황이나 폐쇄경제 하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성장 방식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 경제 환경이 개방화·자유화의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그러한 경제 운용 방식은 그 효과성을 상실,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내게 되었다.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 부문의 취약성, 비효율적 기업 구조나 행태 및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약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경쟁 제한적인 정부의 보호와 규제 속에 안주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부 규제적인 경제 운용 방식에서 탈피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 운용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지향형 구조개혁은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시장지향형 구조개혁의 핵심은 바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의 형성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채택, 효율적인 경쟁질서의 형성을 통해서만 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여건의 형성이라는 기본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고 외국인 투자도 유인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4. 향후 과제 : 경쟁법으로의 전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경쟁정책의 내용 및 경쟁당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 검찰로서의 기능 강화, 시장경제를 창달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강화, 국제 수준의 논의에의 적극적 참여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정책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사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경쟁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근본취지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⁶⁾ 그런데 그 동

6) 즉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이나, 크게 기업집단 규제 규정(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 제한, 상호출자 제한,

안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온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필요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즉 완전개방체제로의 이행, 자유화의 진전 등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이 갖는 의미는 퇴색하고 있으며,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미 시행된 만큼,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조치들은 대부분 그 존속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할 또 하나의 필요성은, 그것이 경쟁정책과 상호 모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다른 사업 진출을 봉쇄하는 경우, 이는 해당 산업의 경쟁 수준 제고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무한경쟁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⁷⁾ 물론 경쟁당국은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민간 경제 부문이 비대해지고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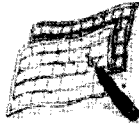
개방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시장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구조를 독과점화하거나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경쟁정책의 근본적 목적은 자유롭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가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당국의 첫 번째 역할은,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다른 요인, 예컨대 정부의 규제에 의한 독과점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미 형성된 독과점이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독과점 기업 자체를 직접 해소하기보다는 그것에 의한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진입장벽을 파괴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경쟁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자유시장경제체제, 지식기반경제 혹은 무한경쟁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

상호지급보증 규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과 경쟁촉진 규정(경쟁과정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규정) 등으로 구분되는 구체적 인 규제 수단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 및 정책의 목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7) 예컨대 경쟁법이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의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에 있다는 시카고 학파의 견해가 효율성 못 지 않게 형평성이나 도덕성 등과 같은 목적도 중요하다는 하버드 학파의 견해를 대체하여 지배적으로 되었으며 실제 현실 정책에 서도 그러하다.



어느 아주머니와의 설전

독점국장 오성환

1996년 9월 조사국장으로 일하던 시절 어느 토요일 오후로 기억된다.

마침 우리 위원회의 테니스동호회 주관으로 성남의 어느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대회가 있어 모처럼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을 나서던 중이었다.

내 나이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미안하면서도 다소 다급한 표정으로 내 방을 노크했다.

애기인즉슨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찾아와 죄송하지만 꼭 국장님과 상담을 해야만

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잠깐 생각 끝에 나는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아주머니와 상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여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결혼한지 10여년 만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데 다행히 아들 둘 다 공부를 잘해 모두 S대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고, 큰 아들은 4학년인데 그 당시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 남편이 작고한 후, 신촌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단지 지하상가에서 떡장사를 오랫동안 해 왔단다. 자기 매장은 지하상가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6개월 여전에 어떤 사람이 지하상가 출입계단 바로 옆에

떡가게를 차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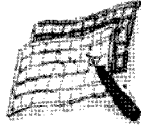
떡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두 자녀를 대학까지 진학시키면서 자기와

함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계를 꾸려 갈 정도의 돈은 벌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하매장에 떡가게가 하나 더 생기고 난지 3~4개월 후부터는 수입이 급감해

드디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아주머니의 주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떡가게가 하나 더 생겼으니 지하매장의 떡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뀐 것은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고 고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기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 개업한 떡가게가 떡값을 자기보다 아주 미미하게 할인하여 판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자기가 시루떡 한 시루를 1만원에 판다면 그 떡가게는 동일분량을
9,980원에 판다는 것이다.

이 여인의 말인즉,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가게보다 더 맛있는 떡을 팔면 고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같이 동일한 메이커에서 공급을
받아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질경쟁은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 생긴
떡가게가 지하상가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데다가 떡값도 쥐꼬리만큼 이나마
싸다보니 단골고객이 하루 이를 지나면서 점점 떨어져나가 이제는
파리를 날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격을 할인하려면 자기가 1만원에 파는 것을 최소한도 100원 정도는 할인해서
9,900원에 판다면 자기로서도 꽤히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가격을
낮추면 그 가게는 또다시 자기 가게보다 10~20원 정도 낮추어 팔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중 「사업활동방해」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법대에 재학중인 두 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탓인지 공정거래법 관련 용어를 꽤 숙지한 인상을 받았다.

상당히 오랫동안 나와 대화를 나누던 끝에 그 떡가게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경쟁을 저해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떡가게가 아주머니에게는 알뜰이 이룰데 없겠지만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음을 설득하였더니
꽤히 승복하는 것이 아닌가? 과장시절부터 상당수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이처럼 꽤히 내 말을 수용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이 여인은 나한테 설득되는 단계를 넘어서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민원인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열심히 설명해 준데 대해 깊이 감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터인데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처럼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몸에 살이 찢 겨를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나를 격려까지 해 주고 돌아갔다.

이 아주머니의 신세한탄도 들어가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후 5시가
넘어 테니스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가슴 뿌듯한 주말 오후였다.